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.

행정·재무위워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8월 26일 / 신창욱의원 외 9인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8월 30일

다. 상정일자: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6. 10. 17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신창욱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 여 방범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 ~ 2조)
- 나.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 및 임무, 활동범위 규정(안 제3 ~ 5조)
- 다. 자율방범대 설립·등록 신고 방법 규정(안 제6조)
- 라.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도·감독 근거 마련(안 제6조, 안 9조)

1

- 마.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(안 제8조)
- 바. 교육, 표창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준용 규정 마련(안 제10 ~ 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합 의: 자치안전과

라. 입법예고(2016. 8. 24. ~ 8. 29.) 결과 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김광식)

○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(목적)와 제2조(정의)에서 조례의 설치 목적과 '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'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었고
- 안 제3조 ~ 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과 임무,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음.
 - ·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함.
 - ·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구역이며, 취약지역 범죄 예방·순찰 및 범죄 신고, 청소년 선도 및 미아·기아·가출인 보호 활동 등을 임무로 하고 있음

- 안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신고의무와 이에 따른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고,
- 안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의근거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설립 신고와 이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였음
- 안 제9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명시하였고.
- 안 제10~11조에는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와 방범활동
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 및 모범 대원에 대해
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 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 - 다만,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되는 봉사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만큼 예산의 규모, 사용목적 등 세부지침 마련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.

본 지원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.

5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, 설립 신고 등을 일부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설립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,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수정함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안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 -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편성·운영한다.
- 안 제3조제3항은 삭제한다.
- 안 제6조를 삭제한다.
- 안 "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"를 각각 "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" 로 변경한다.
- 안 제8조제1항의 '자율방범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'를 '자율방범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'로 한다.
- 안 제8조 제2항, 제3항, 제4항은 삭제한다.
- 별지 서식은 삭제한다.
-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.
- 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7. 토론요지: 생략
- 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수정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자율방범	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자율방법
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	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
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	편성·운영한다.
만,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	
2개 이하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할 수	
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	③ <삭 제>
및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	
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됨을 원칙으	
로 하되,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	
있다.	
제6조(신고 등) ① 자율방범대를	제6조(신고 등) <삭 제>
신설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	
방범대 설립·등록 신고서(이하	
"신고서"라 한다)를 서울특별시	
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	
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	
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	
여부 등을 확인·검토 한 후 15일	
이내에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	
을 교부하여야 한다.	

-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 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록대 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비 지원 등)

- 제8조(자율방범대연합회) ① 자율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 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 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 서구 자율방범연합회(이하 "연합 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 ② <삭 제>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 설 립·등록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합 ③ <삭 제> 회 설립·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 을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 야 하다.
 - ④ 연합회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④ <삭 제>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다.

제9조(지도 및 감독)

제6조(경비 지원 등) 제7조(자율방범대연합회)	1
구성	

제8조(지도 및 감독)

제10조(교육)	제9조(교육)
제11조(포상)	제10조(포상)
제12조(준용)	제11조(준용)
제13조(시행규칙)	제12조(시행규칙)
부칙 제2조(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	부칙 제2조(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
조치)	조치) <삭제>